

의안번호	제 524 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월 일 (제 323회)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3년 8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524
----------	-----

제출연월일 : 2013년 8월 2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
- 경영안정지원(안 제5조)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벼 재배농업인
  -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 경영안정지원의 특례(안 제6조)
  - 시군에서 기금설치나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지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업재해 피해지원을 위하여 각종 국가의 지원금 이외에 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재배농업인과 농업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경영안정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대 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2.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제6조(경영안정지원의 특례)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7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대상 선정) ①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호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및 관리·감독 등) ① 경영안정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 농지	<b>농지소재지</b>					
	읍·면·동	리·통	지번	면적(m <sup>2</sup> )	소유자 (자, 타, 공유)	비고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동장 확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2. 농지 소유주 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

## 관련법령 발췌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15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

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폭염(暴炎), 병충해(病蟲害),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한해(旱害)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이재민의 구호
-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 □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4.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이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등록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하고,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결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⑤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지원범위 : 벼 재배농가 및 농업재해 농가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비율 : 도비 100%

## 2.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5조(경영안정지원) :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대 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2.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3.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외 타도에서 지원하는 쌀 직불금의 평균수준을 도비로 보전하되 ha당 5만원으로 산출한다.
- 2012년 도내 미곡(정곡) 재배면적은 43,254ha를 적용한다.

〈농업재해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

-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태풍 등 농업재해 및 기타 어려운 여건으로 농가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시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하여 연 3억원으로 산출한다.

나. 추계 결과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 43,254ha×50,000원= 2,162,700천원
- 농업재해농가의 경영안정지원금 : 연 3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4.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5. 작성자 :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2,463	2,463	2,463	2,463	2,463	12,315
	벼 재배농가	2,163	2,163	2,163	2,163	2,163	10,815
	농업재해	300	300	300	300	300	1,500
세 출		2,463	2,463	2,463	2,463	2,463	12,315
	벼 재배농가	2,163	2,163	2,163	2,163	2,163	10,815
	농업재해	300	300	300	300	300	1,500
재원 조달		2,463	2,463	2,463	2,463	2,463	12,315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463	2,463	2,463	2,463	2,463	12,315
	지 방 세	2,463	2,463	2,463	2,463	2,463	12,315
	세외수입						
시·군비							